

2020학년도 2/4분기 긴급구호장학금 신청 안내

1. 신청대상 : 긴급한 경제상황에 직면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

- 1)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
- 2)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)
- 3)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(최근 3개월 이내 해당자 한정)
- 4) 국가비상상황(코로나19 등)으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

2. 신청자격

- 1) 학부생 : 2020학년도 2/4분기 재학생
- 2) 대학원생 : 2020학년도 2/4분기 재학생 및 수료생(연구생 등록자限)
- 3) 공통사항: 직전학기 평점 2.4 이상(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)
※ 신입생, 수료생 직전학기 평점기준 없음

3. 선발방법 : 단과대학 추천자 중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(1/4분기 선발자 제외)

- 1) 재학생 성적기준 미달 시 지도교수·부학장 추천서를 대학·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
- 2) 선정 제외 대상 : 재학생 중 규정학기초과자(단, 장학수혜학기 수가 규정학기보다 적을 경우 신청가능), 휴학자, 학사경고·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4. 제출서류 (*2,3번 서류 : 학부 재학생 국가장학금 0~8구간 제출 필요 없음)

- 1) 장학신청서
- *2) 전년도 부/모 소득증빙자료(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)
 - 소득 없는 경우 :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 - 2019년 자료 없을 경우 2018년 자료 제출
- *3) 전년도 부/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- 2019년 자료 없을 경우 2018년 자료 제출
- 4)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부채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)
- 5)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빙(건보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사실통지서, 폐업증빙(폐업사실증명원 등) -2020년 1월~현재 해당자
- 6) 진단서, 입원확인서, 병원진료영수증 등 증명서류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, 해당자에 한함)
- 7) 자연재해 피해내역(최근 3개월 이내, 해당자에 한함)

5.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

- 1) 2020년 7월 중 지급
- 2)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지원하며, 등록금 초과분은 생활비로 지원

6. 신청기간 : 2020. 5. 25.(월) ~ 6. 12.(금)

7. 신청방법 :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자필서명하여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
(성적기준 미달시 장학생 추천서 함께 제출)

8. 문의 : 소속 단과대학 또는 학(과)부 행정실

긴급구호장학금 장학생 추천서

소속 : 대학 학과(부)

학번 :

성명 :

(추천사유)

2020학년도 2/4분기 긴급구호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.

2020 년 월 일

지도교수(대학 부학장) (인)

서울대학교총장귀하